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

-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 -

■ 주 최 : 언론중재위원회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14:30~16: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

2017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

인사말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양인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 그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슈로 떠오른 이후, 각국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새삼 인지하고 대처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단순한 루머의 유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 하겠습니다.

선거과정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기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여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이 충실하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그 폐해가 한층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조기 대선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그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가짜뉴스 사례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분석하여 우리 미디어 환경에 맞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을 참석자 여러분과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언론과 국민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지만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정세훈 교수님과 건국대학교 황용석 교수님, 사회를
맡아주신 진형혜 변호사님과 네 분의 토론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청중의 자리로 돌아가 자리하신 여러분들의 고견
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양 인 석

목 차

◆ 주제발표

제1주제 : 가짜뉴스의 정의 및 국내·외 대응 현황 1

정 세 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제2주제 :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39

황 용 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중재위원)

◆ 토 론

토론내용 71

주 제 발 표

제1주제 : 가짜뉴스의 정의 및 국내·외 대응 현황

정 세 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가짜뉴스의 정의 및 해외 대응 현황

- 가짜뉴스(Fake news)의 정의, 사례 및 대응책 -

정 세 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1. 가짜 뉴스의 정의 및 사례

1) 정의

가짜 뉴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가짜 뉴스가 과거로부터 계속 존재해 왔던 현상이고 풍자, 루머, 오보 등 여러 유사 개념들과 혼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의 정의는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가짜 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정보(misinformation)이다. 하지만 모든 잘못된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는 간혹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를 내지만 오보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오보는 단순 실수나 사실 확인의 오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안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의 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와 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황용석 · 권오성, 2017).

형식적 측면에서 가짜 뉴스는 외형상으로는 실제 뉴스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컴퓨터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뉴스의 틀을 복제할 수 있고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언론사처럼 보이게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한상기, 2017). 특히 뉴스의 틀을 갖춘 가짜 뉴스는 그렇지 않은

가짜 뉴스에 비해 더욱 신뢰를 받기 때문에(오세욱·박아란, 2017) 기자의 바이라인이나 언론사 제호 등을 삽입해 겉모습으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정교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가짜 뉴스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뉴스 형태의 거짓 정보라 정의할 수 있다.

2) 가짜뉴스 사례

가짜 뉴스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슈가 됐던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①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Pope Francis shocks world, endorses Donald Trump for president, releases statement)

2016년 7월, 가짜 뉴스 사이트인 WTOE 5 News 웹사이트에 등장한 이 뉴스는 소셜 미디어를 타고 전세계로 순식간에 퍼졌고, 또 다른 저명 가짜 뉴스 사이트 'Ending the Fed'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연말까지 페이스북에서 90만 번 이상 공유됐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② 오바마 대통령, 국기에 대한 맹세 금지 행정명령 (President Obama signs executive order banning the Pledge of Allegiance in schools nationwide)

가짜 뉴스 사이트 ABCNews.com.co 의 기사로, 2016년 페이스북에서 200만 번 이상 공유되며 가짜 뉴스 중 가장 많은 공유를 기록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뉴스로, 과거 유포된 가짜 뉴스를 다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③ 위키 리크스, 힐러리 클린턴 IS에 무기 판매 (WikiLeaks confirms Hillary sold weapons to ISIS)

2016년 8월, 우파 웹사이트 The Political Insider는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적극적으로 IS를 포함하여 이슬람 지하디스트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이 뉴스는 교묘한 화면 캡처와 논리적 비약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6년 7월 줄리언 어산지의 인터뷰가 있었으나, 그 내용은 미 국무부가 2011년 카다피 제거를 위해 리비아 반군에 대한 무기판매를 승인했고, 카다피 정부 전복 이후 무기의 일부가 시리아 지하디스트와 IS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클린턴 이메일에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The Political Insider가 말한 대로 “IS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어산지의 인터뷰 화면을 편집해서 그럴 듯하게 꾸민 가짜뉴스였다.

(2) 프랑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프랑스는 미국 대선의 가짜 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하여 르몽드, 리베라시옹, AFP 등 37개 언론이 협력해서 팩트체크 사이트 ‘크로스체크(CrossCheck A collaborative journalism project)’를 만들어 여러 형태의 가짜 뉴스를 검증하고 대선에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했다. CrossCheck¹⁾이 검증한 프랑스 대선 관련 가짜 뉴스 일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마크롱 후보 역외 계좌 개설 여부 (Did Emmanuel Macron open an offshore account?)

1) <https://crosscheck.firstdraftnews.com>

대선 결선투표 나흘 전인 5월 3일, 마크롱과 르펜의 토론을 앞두고 마크롱의 사인이 담긴 역외 계좌 개설 서류가 온라인에 업로드 됐고, 토론에서 르펜은 마크롱이 바하마에 역외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루머를 언급했다. 다음날 마크롱 선거본부에서 루머가 거짓이라고 밝혔고, 실제로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서류 안의 사인은 마크롱의 사인과 차이가 났고, 전반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에마뉼엘 마크롱, 사우디로부터 재정적 지원 받았나? (Was Macron's campaign for the French presidency financed by Saudi Arabia?)

마크롱의 경쟁자인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는 위 제목과 같은 기사를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으나 이 뉴스는 AFP통신 등 5개의 언론이 검증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덴마크 일간지 뉴스를 짜깁기한 내용에 Le Soir 라는 매체명을 붙여서 만든 가짜 뉴스였고 르펜은 가짜뉴스로 드러난 뒤 30분 만에 트윗을 삭제했다.

(3) 독일

독일도 2017년 9월 총선 시기에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는 별도의 정부기관 창설과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처벌 등 매우 민감하게 대처했다²⁾. 극우세력이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난민들이 범죄’라는 선동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로 메르켈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공격할 것을 우려한 부분도 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 독일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1/0200000000AKR20170121011700082.HTML>

① 시리아 난민 청년, 테러범 조작 사진 유통에 대해 페이스북 제소

2017년 시리아 난민 아나스 모다마니(19)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입국 시리아 난민인 그는 난민촌에서 메르켈 총리와 사진을 찍었고 그 장면은 메르켈의 난민 포용 정책의 상징처럼 당시 주요 일간지를 장식하고 이후에도 난민 정책을 상징하는 단골 사진으로 쓰였다. 하지만 독일 극우파들이 이 사진을 조작하여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는 어려움을 겪었다. 테러범 의상과 복면을 그의 사진에 합성하여 메르켈이 테러리스트와 사진을 찍었다는 가짜 뉴스는 물론, 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에게 용의자 의혹을 씌운 게시물이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녔다. 개인의 노력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페이스북 사진들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이 회사 차원에서 삭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②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

메르켈이 아돌프 히틀러의 딸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자주 반복되어온 가짜 뉴스로, 독일 내 반 메르켈 진영 뿐 아니라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벌이면서 독일과 메르켈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 중심으로 가끔씩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쪽은 히틀러의 생모 사진과 메르켈의 젊었을 때 사진을 비교하며 닮았다고 주장하거나, 과거 히틀러와 손 모양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놓고 두 사람의 유사성을 보여주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뉴스의 진위여부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 EU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일 메르켈의 리더십과 히틀러로 상징되는 제국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하고자 하는 ‘은유’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짜뉴스 대응 현황

1) 법적 규제를 통한 대응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규제일 것이다. 실제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가짜 뉴스 문제가 떠오르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등 기존 법체계 안에서 가짜 뉴스를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짜 뉴스 금지법의 발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법적 규제를 논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 개입은 콘텐츠 검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짜 뉴스 강제 규제의 첫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³⁾에도 법 적용의 대상이 혐오 발언이라는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전반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 자율 규제를 통한 대응

법적 규제 외의 대안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 규제가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뉴스 유통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소비 현황 분석을 보면, 전세계 26개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45.8%가 대체로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접하며 이는 37.8% 수준인 TV를 통한 뉴스 소비보다 높은 수치였다(김선호·김위근, 2016). 온라인 플랫폼 중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구글과 같은 검색 서비스 등이 있다. 일상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들은 일반 뉴스 뿐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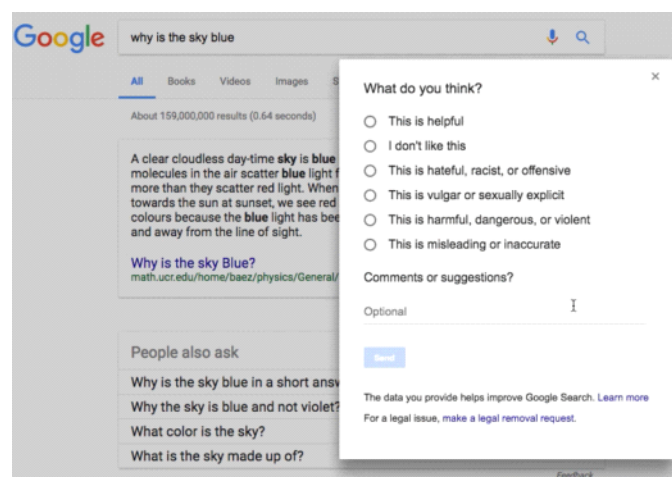
3) 독일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을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라 가짜 뉴스의 이용 및 전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대응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짜 뉴스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짜 뉴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돈이 된다는 것이다. 다량의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광고료를 얻는 것이 가짜 뉴스의 주된 수익구조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짜 뉴스 유포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 게재를 제한함으로써 가짜 뉴스로 인한 수익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2016년 11월부터 거짓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구글 애드센스(AdSense)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내 놓았다. 애드센스는 온라인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 매체 보유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이전부터 음주·흡연 관련 콘텐츠, 성인물, 폭력물 등 유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규제해 왔다. 이에 더해서 ‘오도하는 콘텐츠(misrepresentative content)’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여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광고가 게재되지 못하게 하였다. 페이스북도 비슷하게 광고 파트너 계약을 고쳐 가짜 뉴스 생산자의 간접광고 제한 정책 도입을 검토중이다.

〈그림 1〉 구글 검색어 자동 완성에 대한 피드백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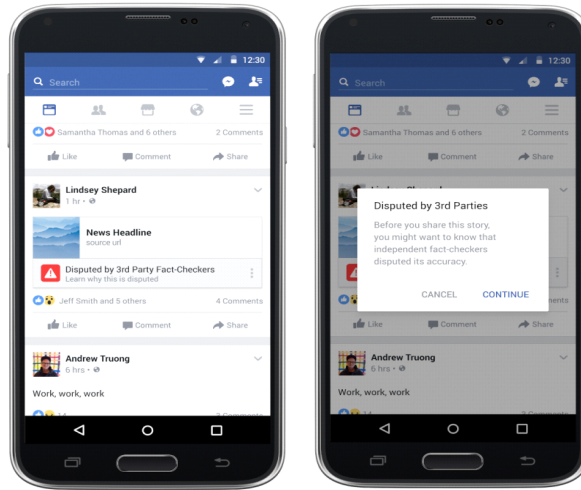
출처: www.google.com



둘째는 알고리즘 개선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관심사항과 성향에 따라 이들에게 잘 맞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나 페이스북 뉴스피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처리 방식이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은 본인 성향에 따라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기존 신념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가짜 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거꾸로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조정할 경우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가 정보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2017년 1월 가짜 뉴스를 뉴스피드 노출 순위에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구글도 검색 결과에 가짜 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색 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다.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정보는 상위 검색 결과로, 신뢰도가 낮은 정보는 하위로 내려 보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부정확한 검색 결과를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은 제3자(third-party)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보다 검증된 정보의 제공이다. 페이스북은 언론사와 협업하여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Facebook Journalism Project)를 통해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언론인 교육, 뉴스 상품 공동 개발, 일반인을 위한 교육의 3가지 핵심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콘텐츠 공급을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뉴스 이용자의 뉴스 선별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은 뉴스 검증 기관 포인터(Poynter)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뉴스일 경우 ‘논쟁 중(disputed)’ 표시를 달아 뉴스 피드 노출 빈도를 낮추고 있다. 이처럼 ‘논쟁 중’인 기사는 공유할 수 있지만 공유 전에 해당 기사의 정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경고문을 띄운다. 구글도 프랑스 대선 당시 르 몽드, 리베라시옹, AFP 등 주요 언론과 협력하여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크로스 체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림 2〉 페이스북 ‘논쟁 중(disputed)’ 표시
출처: 페이스북 뉴스룸(<https://newsroom.fb.com>)



3) 팩트 체크를 통한 대응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외에도 팩트 체크를 통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팩트 체크는 가짜 뉴스로 인해 새롭게 생긴 개념은 아니고 본래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의 발언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저널리즘의 종류이다. 뉴스 이용자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게끔 도와준다. 처음 팩트 체크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1988년 미국 대선이다. 당시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는 상대방인 민주당 듀카키스를 향해 강도 높은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부시가 승리함으로써 당시 선거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특히 근거 없는 파상공세를 통한 네거티브 전략 자체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검증단계 없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도했다. CNN 기자 브룩스 잭슨은 정치 광고를 검증하는 ‘애드워치(AD Watch)’와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 체크(Factcheck)’ 코너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팩트 체크 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다(마동훈·오택

섭·김선혁, 2013). 또한 2003년 펜실베이니아대 애너버그 공공정책 센터의 ‘팩트 체크 닷오알지(Factcheck.org)’가 오픈하여 언론사로부터 독립된 팩트 체크 기관이 출범하였고, 2011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팩트 체크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팩트 체크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듀크대 Reporters’ Lab 은 전 세계의 팩트 체크 사이트와 조직이 134개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그림 3〉 미국의 대표적 팩트 체크 사이트 중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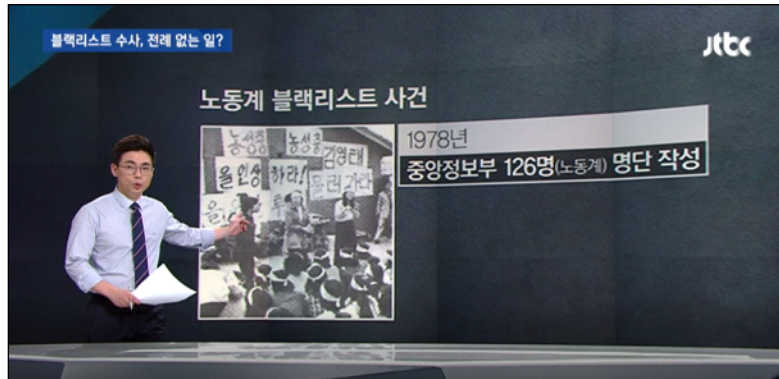
〈팩트 체크닷오알지〉 홈페이지

출처: www.factcheck.org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팩트 체크가 조명을 받았다. 대선 기간 동안 팩트 체크를 한 매체는 모두 28개였고, JTBC 와 SBS는 대선 이후에도 고정적인 코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언론사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3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SNU팩트 체크’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림 4〉 JTBC <팩트 체크> 출처: JTBC 홈페이지



〈그림 5〉 SBS <사실은> 출처: SBS 홈페이지



팩트 체크가 가짜 뉴스 대응책으로 주목 받는 이유는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기능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은 언론사의 기본적인 책무로, 모든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많은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언론이 뉴스의 사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지 못한 채 기사를 내보내게 하고 있다. 형식적 객관성을 앞세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he said, she said journalism)’ 식의 보도는 언론 스스로를 방관자의 자리로 내몰았고,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결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팩트 체크는 뉴스의 사실성을 판정해주는 심판자의 역할을 언론에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 검증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스스로 중립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부여한다(정은령, 2017).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

앞서 언급한 법적 대응과 자율 대응은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전략인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은 뉴스 소비 과정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생산 과정에 개입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는 징벌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규제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시장의 자정(自淨) 기능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규제의 일종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이제 막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가 스스로 좋은 뉴스를 가려서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팩트 체크도 뉴스의 참 거짓을 알려줌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팩트 체크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사후 대처 방안이다. 특정 뉴스에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 전수를 대상으로 팩트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퍼져버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팩트 체크의 효과와는 별개로 미디어 교육을 통해 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모든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초기 개념은 미디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근래에는 미디어 콘텐츠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Aufderheide, 1993). 특히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기존에는 미디어만 할 수 있던 정보 생산을 보통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된 요즘에는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과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감수성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며 성장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미디어 활

용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장점을 많이 갖지만 이것이 수준 높은 미디어 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중학생의 82%가 뉴스와 네이티브 광고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Wineburg, McGrew, Breakstone, & Ortega, 2016), 이처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보의 양과 접근성은 급격히 향상된 데 비해 콘텐츠를 올바로 이용하는 능력은 이에 맞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구 사회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가짜 뉴스 이슈가 부상하며 가짜 뉴스에 중심을 둔 미디어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École)’ 행사를 매년 진행하는데 2017년에는 ‘정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민 교육에 힘을 모았다. 또한 프랑스 국립미디어센터는 ‘대선과 팩트 체크’, ‘미디어 집중 현상’, ‘정보 출처’, ‘정보와 광고의 구분’, ‘정보, 선전, 음모론의 구분’ 등의 주제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진민정, 2017).

〈그림 6〉 ‘정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7년
프랑스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 출처: 프랑스
국립미디어센터 공식 트위터



4) 기사 형식을 띤 광고

미국은 가짜 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류동협, 2017). 워싱턴 주는 온라인에서 가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시민의식,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 과정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성공 사례는 모아서 온라인 상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과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올바른 정보 분별력을 키워서 최소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 전체가 그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언론 등 관련 기관은 간단한 교육 자료나 가짜 뉴스 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함으로써 가짜 뉴스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제 도서관 협회 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는 ‘가짜 뉴스 식별법(How to spot fake news)’이라는 인포그래픽을 배포하여 “(1) 출처를 확인할 것 (2) 기사의 전문을 읽을 것 (3) 작성자를 확인할 것 (4) 뒷받침하는 정보가 올바른가? (5) 뉴스의 날짜를 확인할 것 (6) 농담은 아닌가? (7) 나의 생각이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가? (8)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 과 같은 유용한 조언을 담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했다.

〈그림 7〉 가짜 뉴스 식별을 위한 인포그래픽
한국어 버전
출처: IFLA 홈페이지
(<https://www.ifla.org/publications/node/11174>)



〈표 1〉 대응 방안별 비교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리터러시 교육
범위	일반적 (전체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구체적 (특정 뉴스)	일반적
주체	정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언론사, 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대응 시기	사후적	사후적	사후적	사전적
장점	강제적 실효성 높음	효율성 높음	비교적 용이	논란의 여지가 적음
단점	논란의 여지	기술 구현 비용	객관성 기술 구현 비용	많은 시간과 비용

참고문헌

- 김선호 · 김위근 (2016).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류동협 (2017).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미국의 미디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 1호, 86-89쪽.
- 마동훈 · 오택섭 · 김선혁 (2013). <저널리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한국형 팩트체킹 모델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오세욱 · 박아란 (2017).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전자매체본]. <미디어 이슈>, 3권 3호, URL: <http://www.kpf.or.kr/site/kpf/research/selectMediaPdsView.do?seq=574068>
- 정은령 (2017). 팩트체킹 뉴스 의미와 한계. <관훈저널>, 143호, 19-25쪽.
- 진민정 (2017). 프랑스 끌레미의 ‘2017 언론주간’ 들여다보기. <미디어리터러시>, 1호, 76-79쪽.
- 한상기 (2017). 가짜 뉴스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 방안[전자매체본]. <KISA Report>, 2호, 3-7쪽.
URL:http://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324&cPage=&ST=TC&SV=
- 황용석 · 권오성 (2017). 가짜 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16권 1호, 53-101쪽.
- Aufderheide, P.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Aspen Institute, Communications and Society Program,
- Jeong, S. H., Cho, H., & Hwang, Y. (2012). Media literacy interv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mmunication, 62(3), 454-472.
- Wineburg, S., McGrew, S., Breakstone, J., & Ortega, T. (2016). Evaluating Information: The Cornerstone of Civic Online Reasoning. Stanford History Education Group. Retrieved from <https://sheg.stanford.edu/upload/V3LessonPlans/Executive%20Summary%202011.21.16.pdf>

참 고 자 료

(주제발표 파워포인트 자료)

가짜 뉴스 대응 사례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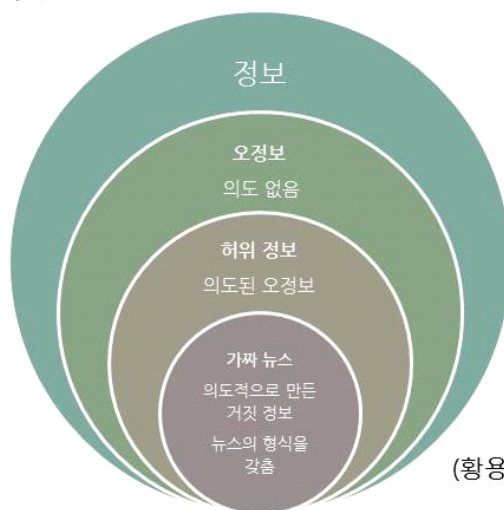
정세훈 (고려대학교)

목차

- ❖ 가짜뉴스 정의 및 사례
- ❖ 가짜뉴스 대응 및 효과
 - ❖ 자율규제
 - ❖ 팩트체크
 - ❖ 미디어 (뉴스) 리터러시 교육

가짜 뉴스란?

- ❖ 내용적 측면: 사실과 다른 정보(오정보) /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허위 정보)
- ❖ 형식적 측면: 뉴스의 외형



(황용석·권오성, 2017 참조)

가짜 뉴스 사례

- ❖ 오바마 대통령, 국기에 대한 맹세 (Pledge of allegiance) 금지 행정명령
 - 가짜 뉴스 사이트 ABCNews.com.co의 기사
 - 2016년 가장 많이 공유된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사례

- ❖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 가짜 뉴스 사이트 WTOE 5 News에 게재
 -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 → 페이스북에서 90만 번 이상 공유



가짜 뉴스 사례

- ❖ 위키 리크스, 힐러리 클린턴 IS에 무기 판매
 - 극우 성향 웹사이트 The Political Insider에 게재
 - 위키리크스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IS 등 이슬람 테러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내용



가짜 뉴스 사례

- ❖ 메르켈은 히틀러의 딸
 - 메르켈 총리 어린시절 사진을 히틀러와 히틀러 모친의 사진 등과 비교하며 유사성 주장
 - 독일 내 반 메르켈 진영 뿐 아니라 메르켈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



목차

- ❖ 가짜뉴스 대응
 - ❖ 자율규제
 - ❖ 팩트체크
 - ❖ 미디어 (뉴스) 리터러시 교육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 ❖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방법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미디어 교육
주체	정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사업자	언론사, 공공기관 교육기관(49%)	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 언론사
범위	일반적 (전체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구체적 (특정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대응 시기	사후적	사후적	사후적	사전적
장점	강제성	효율성 높음	비교적 용이	논란의 여지가 적음
단점	논란의 여지	기술 구현 비용 기술의 실패	객관성 기술 구현 비용	시간과 비용

자율 규제

❖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들 중심 대응

❖ 주요 대응 방법

- ① 경제적 이익 제한
- ② 알고리즘 조정
- ③ 제 3자(third-party) 전문가와의 협업

경제적 이익 제한

- 가짜 뉴스 생산의 주요 원인: 온라인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제한
- 구글: 2016년 11월부터 허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misrepresentative content)는 구글 애드센스(AdSense)서비스에서 제외
- 페이스북: 광고 파트너 규약을 개정하여 가짜 뉴스 생산자의 간접광고 제한 정책 도입 검토

Misrepresentative content

What's the policy?

Users don't want to be misled by the content they engage with online. For this reason, Google ads may not be placed on pages that misrepresent, misstate, or conceal information about you, your content or the primary purpose of your web property.

Examples

Examples*

Not accep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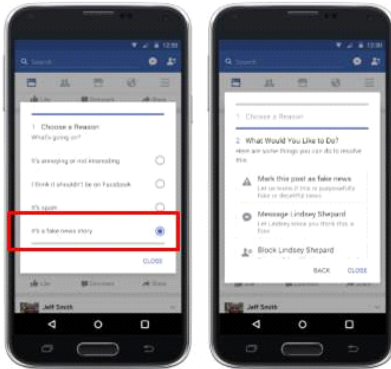
- Enticing users to engage with content under false or unclear pretenses
- "Phishing" for users' information
- Promotion of content, products, or services using false, dishonest, or deceptive claims (e.g. "Get Rich Quick" schemes)
- Impersonating Google products
- Falsely implying having an affiliation with, or endorsement by, another individual, organization, product, or service

* Please note that these are examples and not intended to be complete or comprehen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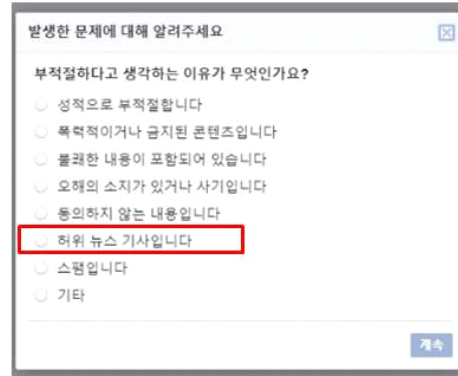
구글의 애드센스 운영 정책 - 금지 항목

알고리즘 개선

- 검색엔진 검색 결과나 페이스북 뉴스피드 등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
- 역으로 알고리즘 조절을 통해 가짜 뉴스가 정보망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페이스북 & 구글: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로 판단되는 콘텐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가짜 뉴스의 노출 순위를 낮추는 알고리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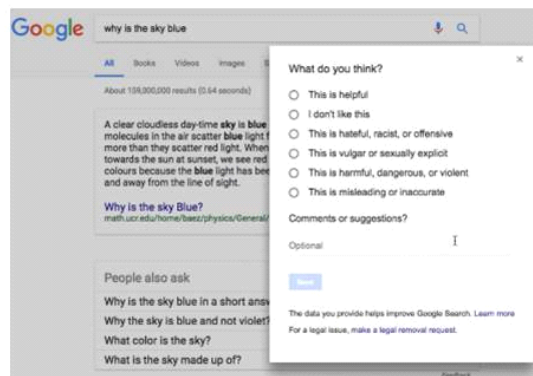
페이스북 가짜뉴스 신고 메뉴



페이스북 가짜뉴스 신고 메뉴: 국내

알고리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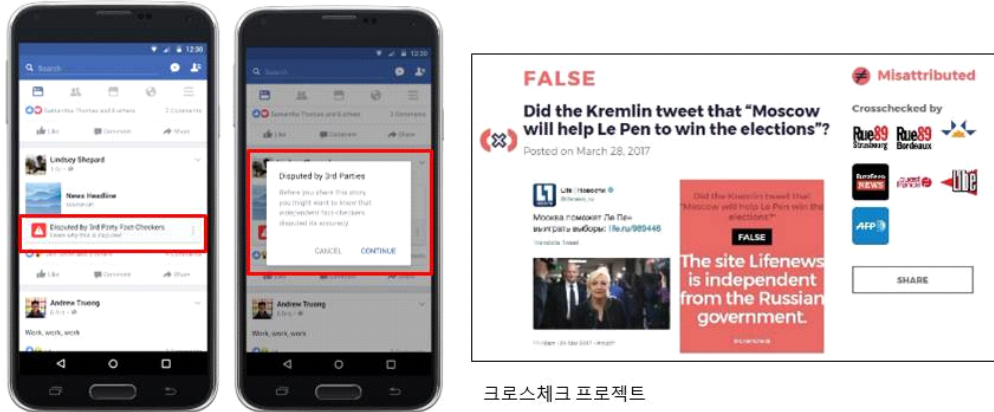
- 구글



구글 가짜뉴스 신고 메뉴

제3자 전문가 협업

- 제3자(third-party)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제공
- 페이스북: 뉴스 검증 기관 **포인터(Poynter)**를 통해 뉴스 내용을 확인한 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논쟁 중(disrupted)' 표시를 달고 뉴스 피드 노출 빈도를 낮춤. 공유시에도 기사의 정확도에 의심이 간다는 경고문 노출.
- 구글: 프랑스 대선 당시 프랑스 주요 언론들과 협력하여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진행



페이스북 논쟁 중 표시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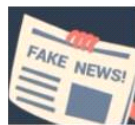
팩트 체크

- ❖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 등의 정치·사회적 발언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저널리즘의 일종
- ❖ 뉴스 이용자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뉴스 해석의 지침을 제공
 - ➔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
- ❖ 1988년 미국 대선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2000년대 초반 팩트체크닷컴알지(Factcheck.org), 팩트체커(The Fact Checker), 폴리티팩트(Politifact) 등 주요 팩트체크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
- ❖ 국내에서는 JTBC, SBS 등 언론사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진행

Factcheck.org - 대학 독립 연구기관

- 펜실베이니아대학 애너버그 공공정책 센터에 기반을 둔 팩트체크 시스템
- 2005년 설립된 최초의 팩트체크 기관
- 전문 검증자 및 경영자, 펠로우 등으로 구성된 팩트체크팀이 일평균 1건 정도의 팩트체크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
- 후원금 기부금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독립성 확보
- 정치 뿐만 아니라 과학 이슈나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루머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짐

Share The Facts



Multiple websites



"President Trump Signs Executive Order Stripping NFL Of 'Non-Profit' Status"

Multiple websites - Monday, October 9, 2017

FACTCHECK.ORG

SHARE READ MORE



Factcheck.org - 대학 독립 연구기관

www.factcheck.org

HOME ARTICLES ASK A QUESTION VISUAL STORY ARCHIVES ABOUT US SEARCH MORE

SCICHECK THE WIN

Did Air Quality Improve Under Obama?

By Hannah Schepers, Published September 22, 2017

Facebook Twitter LinkedI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asic Scott Pruitt criticized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for leaving 40 percent of Americans with air quality that doesn't meet EPA standards. By some measures, that is true. But a report Pruitt's office cited as evidence said there had been a "major improvement" in air quality under Obama.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s 2017 air quality report does say that 38.5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breathing "unhealthy air," based on EPA data from 2013 to 2015 for two of the most common air pollutants. However, that figure is down from 58 percent of the population before Obama took office. Pruitt also failed to mention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updated the standard for the top set of the six air pollutants that the EPA regulates under the Clean Air Act, one of which hadn't changed since the early 1970s, when the act was first put into law.

Pruitt made his claim on Sept. 11 during an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Post's Heather

Pruitt, Sept. 11: Factually lack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s being the environmental savior. Really? He was the environmental savior? He's the gold standard, right? He left us with more Superfund sites than when he came in. Air quality standards, 40 percent of the country, nonattainment.

This isn't the first time Pruitt has criticized Obama's environmental record. In May, he cited the same 40 percent figure on Hugh Downs' radio show, adding, "What exactly did [the Obama administration] accomplish for the environment that [this] is so excited about?" Pruitt has a right to his opinion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stands for the "gold standar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he also is starting — that 40 percent of Americans live in nonattainment areas — without providing any context. In fact, there's evidence of improvement in air quality under Obama.

Pruitt also kept telling the whole story when it comes to Obama's action on Superfund sites.

ASK FACTCHECK

Facebook Twitter LinkedIn

Q: Did President Donald Trump shut down a service dog training program for veterans?

A: No.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 ended its contract with the program and told us that the president was not a factor.

Read the full question and answer. View the Ask FactCheck archives. Have a question? Ask us.

Donate Now Because facts matter.



Factchecking science-based claims.



Factchecking the health news deluge.



Associated Press rights of

Share The Facts



Scott Pruitt
EPA Administrator

Lacks Context

Obama left 40% of the U.S. with air quality that doesn't meet EPA standards.

Interview with Washington Examiner - Monday, September 11, 2017

FACTCHECK.ORG

SHARE READ MORE



The Fact Checker - 언론사 내부 조직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

Fact Checker The Truth Behind The Rhetoric | By Glenn Kessler

Congress · Issues · Trump · 2020 Candidates · About

Ad created by Google

Analysis
President Trump and accusations of sexual misconduct: The complete list

There are at least 13 women who have accused Trump of sexual misconduct. Here's the complete list, with their evidence.

Mag Kelly · Donald Trump, For the Record · 4 hours ago

Analysis
Meet Paul Ryan's 'Cindy,' a single mom who he says gets \$700 from the tax bill

House Speaker Paul Ryan's numbers add up, to a certain extent. But he only tells half of the story.

Glenn Kessler · Congress, Economic Policy · 1 day ago

Analysis
Ivanka Trump touts GOP tax cuts with data borrowed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Trump claims the U.S. doesn't invest enough in young children, and her figures come from an unlikely source for a Trump official.

Nicole Lewis · Issues · 2 days ago

PolitiFact.com - 언론사 내 독립기관

- 템파베이 타임즈(Tampa Bay Times)의 워싱턴 지국에서 운영하지만 언론사 내부 독립 기구로 운영
- 2007년 출범
- 진실-거짓을 6단계로 나누어 보여주는 Fact-O-Meter 외에 말 바꾸기 검증(Flip-O-Meter), 공약 준수 검증 (Promise Meter)도 진행

MARSHA BLACKBURN

"When Phoenix dropped its sanctuary city policy in 2008, its murder rate fell 27 percent the following year."

— *PolitiFact National* on Friday, November 17th, 2017

HALF TR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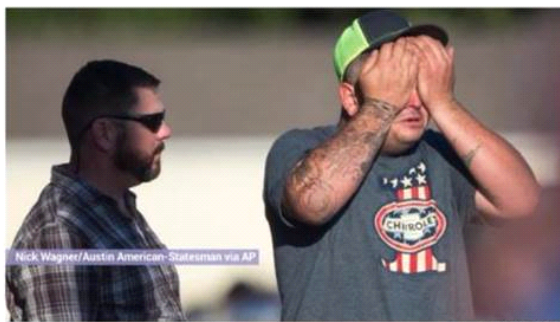
Additional factors likely at play

	진실: 정확한 발언으로 주요 내용 누락 없음
	대부분 진실: 정확하지만 해명이나 보충 자료 필요
	절반의 진실: 부분적으로 정확하지만 상세 정보가 누락
	대부분 거짓: 진실의 요소는 존재하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결정적 사실이 무시됨
	거짓: 정확하지 않음
	새빨간 거짓말: 정확하지 않으며 허무맹랑한 주장임



Fake news: No proof Antifa, communism compelled Texas shooter Devin Kelley

By Joshua Gulin on Monday, November 6th, 2017 at 5:17 p.m.



Autoplay: On | Off
A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spokesman said Nov. 6, 2017, that Devin Patrick Kelley had been fighting with relatives prior to the Nov. 5 massacre in Sutherland Springs, Texas.



No, Sarah Huckabee Sanders did not dress up as a KKK member for Halloween

By Manuela Tobias on Monday, October 23rd, 2017 at 1:10 p.m.



미디어 교육

- ❖ 자율규제 및 팩트 체크 (생산/유통자 중심)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뉴스 소비자 중심
-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 미디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평가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의미가 발전
-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달리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 예상

프랑스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La Semaine de la Presse et des Médias dans l'Ec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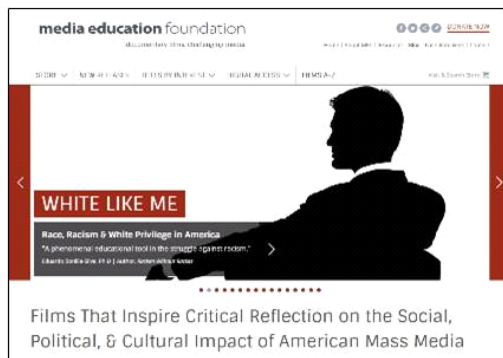
- 프랑스 국립미디어 센터(CLEMI)에서 주최하는 교육 활동
-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함
- "뉴스의 해독은 민주주의의 주요 쟁점 " "청소년과 아동에게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좌표를 알려주고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핵심 지식 제공 "
- 언론사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짐(2017년의 경우 1,850개 매체가 참여)
- 주제에 따른 교육 자료를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뉴스 읽기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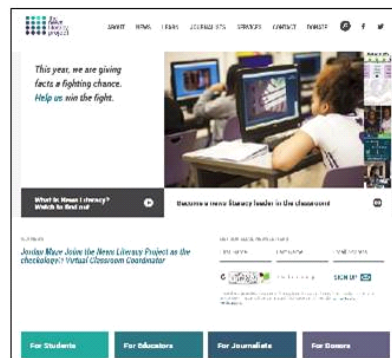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교육 가이드북 <라 파미외 투테크랑>

미국 - 미디어 교육의 의무화

- 1990년대 초반 영어 교육 과정의 일부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처음 등장
-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 정부 단위로 각기 다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짐
- 대학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도 증가하는 추세,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도 개설
- 미디어교육재단(MEF),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the news literacy project) 등 비영리기관 (NGO)
- 미디어교육재단 <http://www.mediaed.org/>
-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www.thenewsliteracyproject.org



미디어교육재단 홈페이지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홈페이지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방법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미디어 교육
주체	정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사업자	언론사(72%) 공공기관(66%) 교육기관(49%)	교육기관(78%) 정부, 공공기관(68%) 언론사(61%)
범위	일반적 (전체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구체적 (특정 뉴스)	일반적 (전체 뉴스)
대응 시기	사후적	사후적	사후적	사전적
장점	강제성	효율성 높음	비교적 용이	논란의 여지가 적음
단점	논란의 여지	기술 구현 비용 기술의 실패	객관성 기술 구현 비용	시간과 비용

가짜 뉴스 대응방안 효과

❖ 자율 규제

❖ 팩트 체크

❖ 미디어 (뉴스) 리터러시 교육

실험 연구 1 (자율규제 & 리터러시)

❖ 설문 개요

- 3(정보량: 많음, 중간, 적음)X2(미디어교육: 유, 무)
- 만 20~70세 남녀 713명 대상

	정보량 많음	정보량 중간	정보량 적음
교육 진행	120	119	119
교육 진행 안함	116	121	118

❖ 실험 진행

- 미디어 교육 → 카톡 메시지 확인

❖ 측정 문항

- 가짜 뉴스 인식, 카톡 링크 확인, 전파 의도

자율규제 효과 실험물(카카오톡)



<정보량 적음(현행 기본정보)>



<정보량 중간(+ 언론사 등록 여부)>



<정보량 많음
(+ 언론사 등록여부 + 심의 여부)>

실험물(미디어 교육)

인터넷 신문 위원회, 모바일 매진자 업체, 온라인 뉴스 공유 시 출처 정보 노출 협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가짜 뉴스 퇴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카카오, NHN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출처 정보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정보 표시제는 예신자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링크)에 반드시 출처 정보를 노출하는 제도로써 정보 유통 효과를 투명화 하여 가짜 뉴스 퇴출을 촉진하는 취지이다.

정보(링크)와 함께 노출되는 출처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사 내용이 심의나 조정을 받고 있을 경우 표시
- 기사 작성 일시
- 작성자(기자명)
- 사이트 유형(언론사 여부)
- 사이트 등록일

인터넷신문위원회 김재진 사무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은 가짜뉴스로부터 정보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며 "학원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모든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정보 표기 예시>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http://www.dailypada.com/articles/565304102826864>
(산학) 통스타 A장 공급일정,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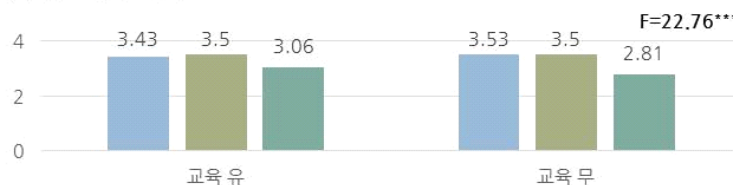
(산학) 통스타 A장 공급일정, 왜?
안기 로고 옆에 A장이 지난날.
www.dailypada.com

* 합제 실적 중인 기사일
작성일자 : 2016. 5. 25. 20:28:03
작성처 : 중앙우 리퍼
등록 : 일반 열 사이트
※ 인터넷 언론사 제정제
사이트 등록일 : 2016.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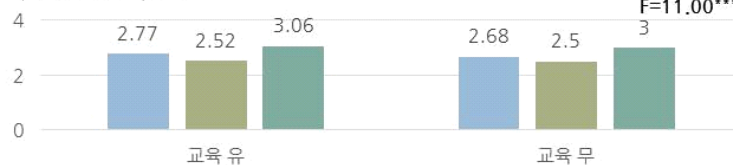
등록 155

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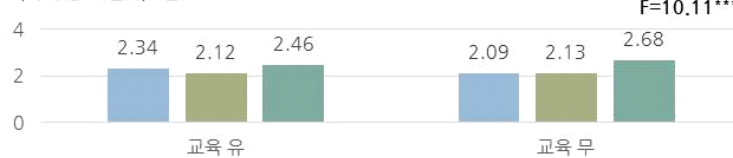
<가짜뉴스 인식>: 증가



<카톡 링크 확인>: 감소



<카톡 링크 전파>: 감소



■ 많음 ■ 중간 ■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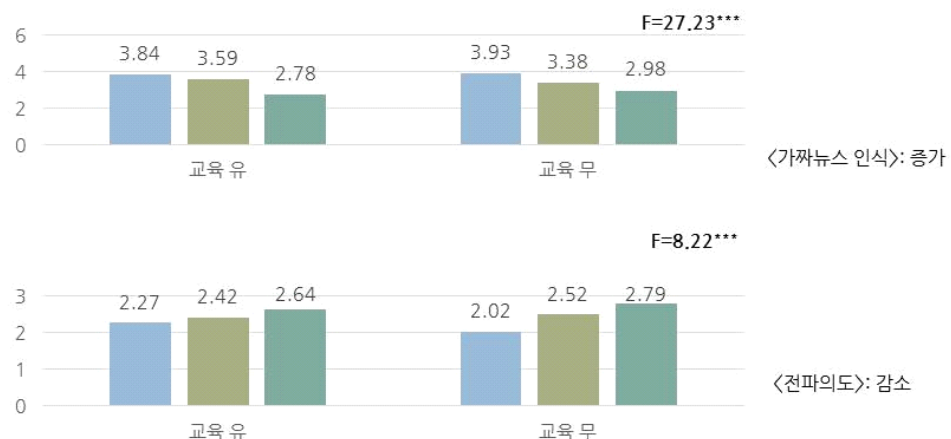
실험물(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제시 예시〉

실험 결과

Q: 방금 본 뉴스는 가짜 뉴스일 것이다



결론

- ❖ 법적 규제의 효과성 및 한계
 - ❖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 ❖ 언론사 및 독립기관의 팩트체크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 ❖ 충분한 동기 부재 (자율규제: 광고제한이나 알고리즘 기술 구현 비용)
 - ❖ 법과 정책은 “자율규제와 “팩트체크”를 지원 (또는 강제)하는 방향

감사합니다

주 제 발 표

제2주제 :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황 용 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 들어가면서 : 가짜뉴스와 개념적 불명확성

“가짜뉴스의 원인은 바로 우리다.”(Vasily V. Gatov, 2017)

러시아 출신 언론학자이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언론학 교수인 바실리 가토브는 베를린에서 개최된 IFRA/DCX 2017 강연에서 가짜뉴스의 원인을 이처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불러온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에 기인한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완벽한 생명체가 아니다. 가짜뉴스는 바로 이 지점, ‘인간의 불완전성’을 파고들어 피어나며 과거부터 인간과 함께해 왔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다. 정치과정에서 페이크 뉴스(fake news)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이를 우리 언론들이 가짜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가짜’ 또는 ‘허위’라는 용어는 맥락의 불일치에서부터 적시하는 사실의 부재 등에 폭넓게 걸쳐 있다. 그런데 가짜나 허위가 가져오는 해악성은 어떤 장르에서,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용어를 다루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단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짜뉴스는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 루머(rumor),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그리고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 등 다양한 용어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황용석 · 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¹⁾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의 개

1)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의 번역은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말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설명적 방식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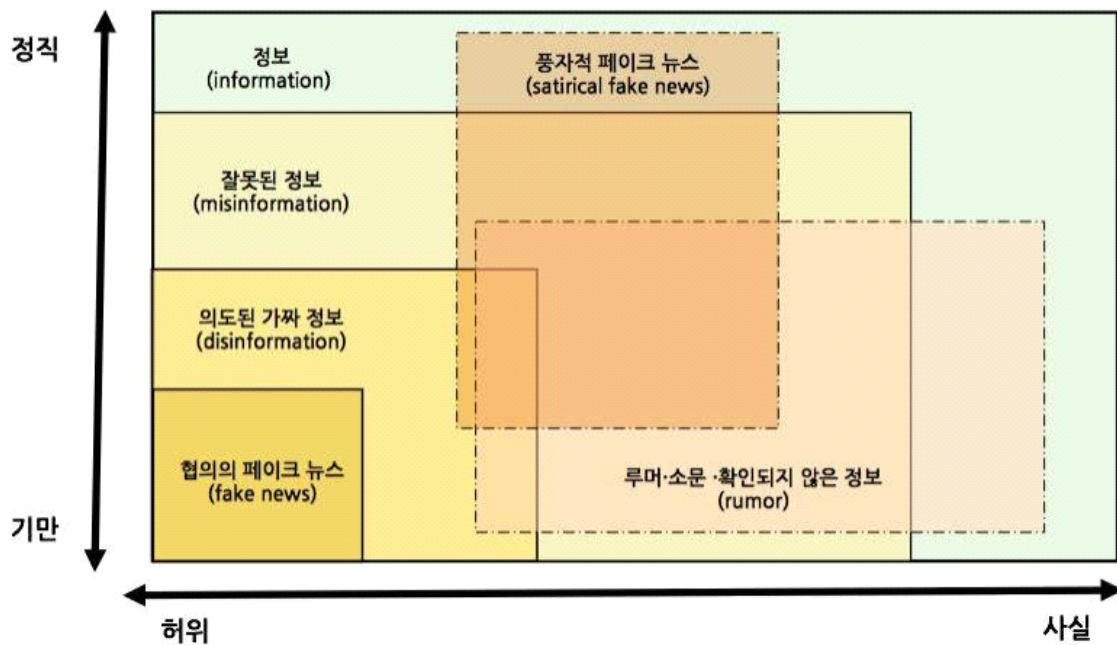
념을 넓게 설명하면, ▷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하고 사실과 다를 때 부르는 오보(false/incorrect report), ▷대중이 있음직한 사실을 입소문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파하는 소문 또는 루머(rumor), ▷잘못을 알고 상대를 비판하거나 비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이는 패러디(parody)와 풍자(satire)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도 포함되는데, 이 용어는 특정한 의도성을 갖고서 정교하게 고안된 가짜 정보를 뜻한다(Antoniadis, S., Litou, I., & Kalogeraki, V., 2015).

칼로바와 피셔(Karlova & Fisher, 2013)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기만성(deceptiveness)으로, 의도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바가 있는지 여부가 가짜뉴스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윌과 오도넬(Jowett & O'Donnell, 2005)은 기만적 정보는 본질적으로 거짓말(lying)과 유사하지만, 이 보다 더 좁게 보아야 한다고 했다. 기만적 정보가 되려면 누군가를 속일 생각(intending to deceive)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속일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만성의 개념 안에는 행위의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도성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기만성은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허위성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만적 정보는 목표 대상을 속이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퍼뜨리는 거짓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말한다(Bittman, 1985). 기만적 정보는 ‘역정보’, ‘날조된 허위정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를 “의도적인 거짓 정보”(deliberately false information)으로 정의하면서, 러시아 말, 데진포르마치야(дезинформация)에서 유래했다고 적고 있다(Karlova & Fischer, 2013). 데진포르마치야의 기원은 19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짜정보 유포를 통해 상대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는 러시아 정부에서 고안된 일종의 사회심리학적 무기를 의미한다(Manning & Romerstein, 2004).

〈그림 1〉 가짜뉴스와 유사개념의 관계



출처 : 황용석 · 권오성(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68.

정치과정과 가짜뉴스 규제론

선전·선동으로 번역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는 기만적 정보의 대표적 형태로 꼽을 수 있다. 조윳과 오도넬(Jowett & O'Donnell, 2005)은 프로파간다의 연원이 1622년 바티칸 교황청이 신세계 전파를 목적으로 펴낸 선전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한 아이디어의 확산 및 촉진”이라는 프로파간다의 원래 정의에는 현대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조작, 선전·선동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진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근대국가의 확립과 냉전 등을 거치면서 프로파간다는 거짓, 왜곡, 조작, 속임수, 정신조종, 심리전, 세뇌 등과 비슷한 의미로 다루어졌다. 프로파간다는 선전원의 의도에 따라 목표 대상의 정보와 인지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방식이 반드시 거짓된 정보의 제공일 필요가 없고, 조작이 정보의 일부 제공 또는 사실의 제공 등 다양한 수준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Jowett & O'Donnell, 2005).

이처럼, 가짜뉴스가 기만적 속성을 내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부분 정치과정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불거진 이유 역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된 기만적 허위정보들 때문이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규제논의 역시 정치과정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수단은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와 내적 규약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과 법률을 통한 타율규제가 있다. 먼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디지털매개자들이 시행하는 자율규제로는 가짜뉴스 운영자에게 들어가는 광고 수입을 죄는 경제적인 압박 정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노출을 정의하는 알고리즘에서 가짜뉴스의 우선권을 떨어뜨리는 정책, 외부의 팩트체크 기관과 협업해 가짜뉴스를 구분해 표시하는 정책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정책이 가짜뉴스 콘텐츠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 생산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간접적인 정책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판단하고 사용자의 이용 환경을 바꾸는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황용석·권오성, 2017).

반면, 법률을 통한 타율규제는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시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네트워크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률은 2017년 독일 총선을 앞둔 2017년 3월 14일에 초안이 마련된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4월 5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었고, 6월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연방법무부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가 밝힌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거짓이 사실처럼 유포되고, 혐오 발언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 방지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심나리, 2017).

이 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이용자들이 임의의 콘텐츠를 교환·게시하거나 공중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텔레미디어 사업자(방송과 사적 통신을 제외한 융합서비스로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를 모두 통칭하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 영상 등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적용대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업자에 최

대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법안으로, 명백한 혐오 발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24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태만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한 명백한 위법 사항은 형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²⁾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후 독일 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비록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규제기준이 모호하고 사법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개인의 표현권을 침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짜뉴스의 개념적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와 관련한 여러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된 바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 주요 의원입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가짜뉴스 관련 법률구조의 특성

1) 허위, 거짓정보, 오인을 포함한 현행 법령

국내에서 ‘허위’, ‘거짓’ 및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은 대부분 특정 국가기관 또는 특정인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있다. 즉, 표현에 의한 피해대상이 특정화되고 허위성 및 고의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망성을 충족조건으로 한다. 반면에 그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은 피해가 즉각적이고 충분히 예상되

2) Act to Improve Enforcement of the Law in Social Networks(Network Enforcement Act)

이 법에서 다루는 명백한 위법 사항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86조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제86a조 위헌조직 표시사용, 제89a조 내란음모, 제90조 연방대통령모독, 제90a조 국가 및 국가상징물모독, 제91조 국가를 위해할 목적으로 한 중대한 폭력 행위 조장, 제111조 공연한 범죄선동, 제126조 범죄 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제129a조 테러 단체 구성, 제129b조 외국의 범죄 및 테러 조직의 독일 내 확산 및 연계, 제130조 국민선동, 제131조 폭력 연출, 제140조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제166조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 단체 등 모욕, 제184b조 어린이 포르노그래피의 유포·구매·소지, 제184d조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통한 포르노그래피 전송, 텔레미디어를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 포르노그래피의 이용, 제185조 모욕, 제186조 비방, 제187조 중상, 제241조 협박 및 제269조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 등이 포함된다(제3항).

는 표시광고나 선거관련 규제에서만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강신욱(2017)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법령에서 ‘허위’를 포함하는 조문 총 56건 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거짓정보제공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1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같은 선거관련 법령이 있다. 또한 표시·광고와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농약관리법(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등이 있다.

또한 현행 법령 중 ‘거짓’을 포함하는 조문 총 73건 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행위를 규정한 것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9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먹는 물 관리법(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선박 위해행위 처벌법(제10조 거짓정보 전달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이 있다.

‘오인’을 포함하는 조문은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 행위를 규제한 규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7조 등록법인 오인표시의 금지)’, ‘상법(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이 있다.

2)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와 법적 구조

현행 규제를 살펴보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문제의 주체와, 이로 인한 피해 상대방을 기준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어 보는 것이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문제 행위의 주체가 언론 매체(언론)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비언론)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등록매체법이 존재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법적으로 부여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방송은 ‘방송법’, 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언론 사업자는 여기서 규정한 요건을 만족시켜 정부에 등록해 권리를 보장받는 방식의 등록제 대상이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언론에 속하는지, 그 외의 주체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규율을 받게 되어 있다(황용석·권오성, 2017).

다른 한편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대상으로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익은 형법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뜻하는데 국가적, 개인적, 사회적 법익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가의 안전과 기밀보호 등과 연관되는 국가적 법익은 여기서 다루는 가짜뉴스 문제와 일반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개인적 법익, 공공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등과 관련되는 사회적 법익, 이 둘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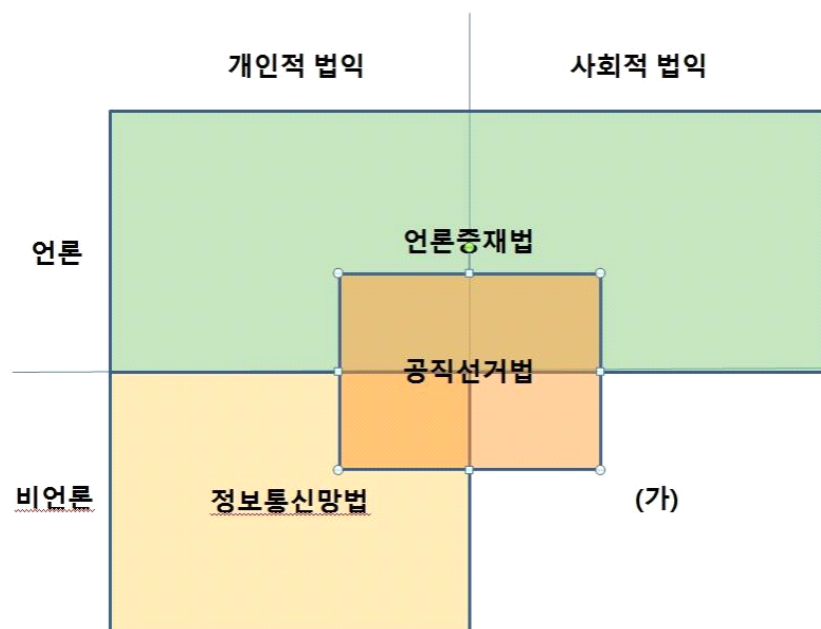
가짜뉴스의 표현에 의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이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타인에는 사람 뿐 아니라 법인체 등 권리를 갖는 조직까지 포함한다. 사회적 법익이란 통상 공익 또는 사회통합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 가치를 뜻하는 말로서, 사회적 법익침해란 이런 가치를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말한다. 가짜뉴스로 인해 정확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혼란을 겪고 이로 인해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저해된다면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 어떤 규제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지 도식화 하여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짜뉴스 관련 신규 규제 마련의 쟁점은 그림에서 (가)로 표시된 언론매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한 사회적 법익침해 영역이다. 이 영역의 가짜뉴스라 하면 특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사회정보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합리적 공적 토론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인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에 대한 처벌조항이 (가)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명시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밝히면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고, “판단주체에 따라 공익인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존재함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판단의 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로,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³⁾.

〈그림 2〉 허위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영역



출처 : 황용석 · 권오성(2017). 앞의 글. 72.

3) 헌재 2010. 12. 1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보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구조를 보면, 피해의 발생주체를 개인, 언론, 사회 및 국가로 구분하고 그 법적 대응방식을 민사, 형사, 행정적 대응으로 구분하면 <표1>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인격적 법익 침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가짜뉴스 생산·유포자에게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가짜뉴스로 인해 언론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특정 언론사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39조 제1항)의 등록의무 위반에도 해당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 및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없다.

<표1> 가짜뉴스의 피해와 대응의 법적 구조

피해발생		법적대응		
구분	내용	민사적 대응	형사적 대응	행정적 대응
개인	명예훼손, 모욕	손해배상 게재중단	모욕죄 명예훼손죄 선거법위반	·인터넷심의 및 시정요구 ·처리제한조치 ·임시조치 ·선거법상조치
언론	업무방해	손해배상 업무방해금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인터넷심의 ·유통제한조치 ·임시조치
사회·국가	유언비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출처: 황창근(2017).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법적 방안. 언론중재. 2017년 봄호. 31.

3. 가짜뉴스 관련 법안의 검토 기준

1) 우월적 지위로서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의원입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가운데, 이들 법안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몇 가지 특수상황이 존재한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우영, 2012). 1991년의 판례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특징이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⁴⁾.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라는 표현은 이후 판례들에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성 여부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함을 뜻한다.

표현의 자유를 ‘우월적 지위’라고 본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 및 다른 기본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더욱 엄격하게 위헌심사기준이 적용되고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범위나 정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우영, 2012).

2) 사전검열의 금지원칙

첫 번째는 허가 및 검열의 금지원칙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1996.10.31.

4) 현재 1991.9.16. 선고, 89헌마165

선고, 94헌가6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과 사후검열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는 사전검열 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위헌 여부 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상의 허가나 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좁혀서 정의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일련의 절들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로 보았다⁵⁾. 반면, 방송사업허가심사와 같은 것은 표현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⁶⁾.

3)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을 모든 기본권 영역에서의 법률 위헌성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입법이 명확성을 결여하면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심사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⁷⁾.

5) 헌재 1996.10.31. 선고, 94헌가6

6) 헌재 2001.5.31. 선고, 2000헌바43

헌재는 이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재판관들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허위’의 개념을 ‘바르지 못한 것’, 또는 ‘참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의 안에는 ‘내용의 거짓이나 형식의 오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관련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단순한 ‘허위’가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시한 것도 바로 이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김경호, 2017).

4)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2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반해서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성 심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⁷⁾. 헌재 1989.3.17. 선고, 88헌마1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위헌법률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잉금지 원칙을 <표2>와 같이 법률의 기본권 제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제시했다.

<표2> 과잉금지원칙의 세부 원칙

목적의 정당성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
수단의 적합성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촉진시키기에 적합한가를 판단
피해의 최소성	목적 달성에 똑같은 효과적인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였는가를 판단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였을 때 양자 사이에 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가를 판단

7) 헌재 2010.12.28. 선고 2008헌마157 등

8) 헌재 1989.3.17. 선고, 88헌마1

헌법재판소는 앞서 살펴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결정(헌재 2010. 12. 1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에서 “‘허위사실의 표현’ 행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보충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을 적시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항상 명백한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표현을 ‘의견’과 ‘사실’로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며 거짓으로 여겨진 표현이 시간이 지난 후에 판단이 뒤바뀌어 진실로 인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설사 특정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사회 일반의 도덕이나 윤리에 반한다고 간주할 수 없으며,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위 당사자의 행복추구라든가 국민주권 및 인격권 구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의견이다⁹⁾.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재판관들은 헌재의 2002년 결정¹⁰⁾을 인용하면서 ‘허위의 통신’이라는 불명확한 규범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표현에 내포되어 있는 유해성에 대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으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에 반하는 허위의 통신’의 규제는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표현까지도 규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통신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 이용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허위의 통신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한 표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박도 가능하여 표현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질서의 교란’이 나 ‘범죄의 선동’ 등 구체적 위협의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익에 반한다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재판

9) 헌재 2010. 12. 1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의 보충의견

10)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소는 오히려 그러한 표현이 사회적 현안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실시했다¹¹⁾.

4. 가짜뉴스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2017. 11. 현재)과 진단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짜뉴스와 관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표3〉 가짜뉴스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안명	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검토사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주호영 의원 등 10인	2017. 4.25. 의안번호 2006805	-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u>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즉각적인 표시의 의무를 도입(안 제17조의2제1항)</u> -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u>초 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u> -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안 제33조 신설 등)</u>	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명확성의 원칙

가. 조정신청 내용의 알림표시의무

주호영 의원 개정안 제17조의2 제1항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11) 현재 2010. 12. 1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기사에 관하여 조정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률의 목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은 대안적 분쟁조정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정, 반론, 추후보도, 조정신청 등 신청인의 청구만으로 그 자체가 내용물의 위법성 또는 그에 준하는 바를 정의내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한 조정신청만으로 알림표시를 하는 것은 언론사 기사에 부정적 낙인을 찍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을 받거나 조정신청 접수 통보를 받은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알림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피해확산의 방지효과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가 커서 법익의 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명령 요청 권한 신설

주호영 의원 개정안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해당 언론사 등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시정명령 요청) 및 34조(과태료) 신설).

〈표4〉 언론의 허위의 사실 보도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 ~ ⑪ (생략) 제5절 시정권고 <u>〈신설〉</u>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의 결정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3조(시정명령 요청)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언론사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u>〈신설〉</u>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사실보도에 대한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는 기구로서, 보도된 사실의 진위를 가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사실보도에 대해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행정적 내용규제기구로 그 역무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언론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5〉 가짜뉴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안명	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 호 영 의원 등 10인	2017. 4.25. 의안번호 2006804	-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인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안 호 영 의원 등 17인	2017. 5.30. 의안번호 2007095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가짜뉴스로 정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대한 삭제 책무를 부여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예방(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
	이 은 권 의원 등 10인	2017. 7.26. 의안번호 200819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등)
	송 희 경 의원 등 10인	2017. 8.4. 의안번호 2008392	-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제70조제2항 등). - 가짜뉴스 전파·확산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삭제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도 마련하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등)

가. 불법정보로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개념정의의 문제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 제출된 법안들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법적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직접적으로 가짜뉴스의 정의를 법안에 포함한 안호영 의원안 제2조제1항제14호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 안은 가짜뉴스를 ① 매개기술로서 정보통신망의 사용, ②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 ③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하는 언론보도 양식의 차용의 3가지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기만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허위 또는 거짓통신의 개념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라는 정의는 뉴스 형식을 차용한 것이 곧 기만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정보의 형식만으로 ‘기만적 의도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과 관련한 위헌 결정에서 ‘허위의 통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상충한다.

또 민간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사회적 피해 수준과 악의성 및 기만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들이 검토될 수는 있지만, 국가법령을 통해 허위사실의 조건을 적시하여 규율하는 것은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

한편 법률상 ‘고의’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가짜뉴스의 위법성이나 처벌가능성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가 법적 정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더불어개정안의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표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의 가짜뉴스 개념 정의

구분	주요 내용	벌칙조항	검토사항
김관영 의원안	-이용자는 거짓의 사실을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 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유통 시켜서는 아니 됨		-명확성의 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으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과잉금지원칙
주호영 의원안	○ 불법정보 신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 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 용의 정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하의 벌금 (불법정보 유통 자)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심의 중인 불법정보에 대한 표 시 의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 판 관리·운영자)	-과잉금지원칙
안호영 의원안	-가짜뉴스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 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 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 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 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 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가짜뉴스로 정의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와 상 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 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과잉금지의 원칙

이은권 의원안	-이용자는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됨		-명확성의 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게재·전시 또는 유통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개정한 주호영 의원안은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있는데,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주호영 의원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3조제5호 신설). 여기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 목적의 허위 또는 왜곡된 표현물’을 불법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앞서 살펴본 안호영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위헌 결정의 취지에 위배된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을 통한 가짜뉴스의 개념정의를 있다. 김관영 의원안 제44조제1항 및 이은권 의원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은 ‘언론보도 형식의 거짓사실 유통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안은 이용자에 대해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김관영 의원안 제44조제1항), 이은권 의원안은 이용자에 대해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시키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은권 의원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 형식이나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유통을 금지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목적과는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어 법 체계적 문제가 발생한다.

〈표7〉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관련 입법안

현행	김관영의원안	이은권의의원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u>명예훼손</u>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 ----- <u>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u> 등-----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신설〉		1. <u>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u>
〈신설〉		2. <u>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u>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u>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 <u>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는 것</u> 을----- ----- ----- ----- -----.

나. 거짓정보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 등

김관영 의원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안은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 요청에 ‘거짓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정보’는 ‘사실의 정보’와 ‘거짓의 정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익이 적다.

또한 안호영 의원안 제44조의2제7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은권 의원안 제44조의2제3항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백히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게재·전시 또는 유통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은권의원안 제44조의3제1항).

이처럼 안호영 의원안과 이은권 의원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및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다.

또한 이은권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임의의 임시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조건부 임시조치)

에 비해 정보를 삭제당한 이용자로부터의 소송제기 등 법률적 리스크가 커지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사적 과잉규제를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입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는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명확한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표현물을 삭제할 수 있게 권한을 법령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권리침해신고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조치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임시조치는 특정화되어 있는 인격 또는 법인격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에 의해 처리되는 것에 비해 위 법안들은 정보통신사업자의 임의적 판단만으로 표현물을 임시조치 또는 삭제하게 함으로써 위헌적 요소가 있다.

다. 심의 중인 불법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주호영 의원안 제44조의8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가 심의 중에 있음을 표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¹²⁾.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인 것이 곧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표현물에 대한 낙인효과를 주는 것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12) 주호영의원안 제44조의8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제44조의8(심의 중 표시의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에 관하여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은 주호영 의원 법안이 있다. 이 법안 제82조의4, 제82조의8에서는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가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정보가 가짜뉴스임이 표시되게 하고 있다(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8 신설 등).

〈표8〉 가짜뉴스 관련 국회 의원입법안 개요

법안명	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검토사항
공직선거법	주 호 영 의원 등 10인	2017. 4.25. 의안번호 2006807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안 제82조의8제1항,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 또는 해당 정보 게시자 등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안 제261조제4항)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입법체계상의 문제

이 법안의 문제점은 ‘가짜뉴스’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또한 가짜뉴스를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성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

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및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이미 규율되고 있어, 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성격이 강한 소셜네트워크 대화방과 개인 블로그 등의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 개념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및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모두 안고 있다.

5. 마무리하면서

가짜뉴스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하나이다.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도 아니다. 가짜뉴스가 주목받게 된 것은 초연결 사회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 때문이다. 정보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념이 해체되고, 개인 미디어가 연결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사회정보의 유통구조는 크게 바뀌었다. 또한 언론과 같은 정치매개집단의 영향력 약화는 통제 불가능한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짜정보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보가 전파되고 매개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이며, 그 속에 존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이다.

이 글에서 분석한 입법안들은 사회여론에 대한 제도적 규율과 통제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안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참여촉진적 공간으로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과도한 사회적 불안감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월적 지위를 갖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반영한 헌

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조항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사회적 법익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및 허위통신에 대한 규제가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정보를 규제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물을 민간 사업자에 책무를 부여해서, 모니터링,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최근 김성태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제44조의9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불법정보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 제44조의9제3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모니터링 및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조직·시설·운영체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니터링을 통한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통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이용자의 표현물을 스스로 판단하고 삭제하게 하는 강제규정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표현물에 대한 처벌적 권한을 국가가 위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의 문제, 국외 사업자와 비교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지워진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법령의 목적 정당성에 맞지 않는 조항이 다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 개정안에서는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언론사 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행정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쟁조정기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규범적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알람표시 의무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심의중인 불법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등 이다. 이는 표현물에 낙인을 찍는 효과를 만듦으로써 표현자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난 10월 Ifra/DCX에서 열린 제프 자비스(Jeff Jarvis) 교수의 강연 제목은 “트럼프의 놀림감이 되지 마라”였다. 가짜뉴스와 같이 허위사실 규제논의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가짜뉴스 문제에서 대두되는 디지털 공간의 신뢰 위기를 논할 때, 정부와 정치기관이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중이 대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적 소통이 교차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비스 교수의 주장처럼, 언론과 사회 및 학술기관의 팩트체킹 노력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관점을 경험하는 소통의 구조가 법령적인 도구보다 더 우선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갖는 우월적 지위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상욱 (2017). 가짜뉴스 관련 법제현황(방통위 연구반 참고자료)
- 박아란 (2017, 2, 14). Fake News(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 심나리 (2017). 소셜 네트워크의 페이크뉴스와 혐오표현, 법적 규제 가능할까 : 독일 네트워크시행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언론중재. 2017년 가을호, 100-106.
- 이우영 (2012).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2호, 285~317.
- 최병진 (2002). 오보와 그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7. 249-27
- 황용석·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53-101.
- 황용석·이동훈·김준교 (2009). 미디어책임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 연구. 17(1). 102-134.
- 황창근 (2017, 3, 20).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제1회 KISO 포럼 :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URL: http://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7/03/KISO-%ED%8E%98%EC%9D%B4%ED%81%AC-%EB%89%B4%EC%8A%A4%EC%99%80-%EC%9D%B8%ED%84%B0%EB%84%B7-%EC%9E%90%EB%A3%8C%EC%A7%91_F.pdf
-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NBER Working Paper No. 23089, 5-6.
- Allport, G. W., & Postman, L. (1947). The psychology of rum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Antoniadis, S., Litou, I., & Kalogeraki, V., (2015, 10, 26). In C. Debruyne, H. Panetto, R. Meersman, T. Dillon, G. Weichhart, Y. An, & C. A. Ardagna, (Eds.) A model for identifying misinformation in online social networks.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pp. 473-482).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Balmas, M. (2014). When Fake News Becomes Real: Combined Exposure to Multiple News Sources and Political Attitudes of Inefficacy, Alienation, and Cynicism. Communication Research 2014, 41(3), 430-454
- Baym, G. (2010). From Cronkite to Colbert: The evolution of broadcast news. Boulder, CO: Paradigm Press.
- DiFonzo, N. & Bordia, P.(2007). Rumor, gossip, and urban legend. Diogenes, 54, 19-35.
- Fetzer, J. H. (2004). Disinformation: The use of false information. Minds and Machines 14, 231-240.
- Frenda, S. J., Nichols, R. M., & Loftus, E. F. (2011). Current issues and advances in misinformation researc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1), 20-23.

- Hunt, E. (2016, 12, 17). What is fake news? How to spot it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dec/18/what-is-fake-news-pizzagate>
- Zhu, B., Chen, C., Loftus, E. F., Lin, C., He, Q., Chen, C., & Dong, Q. (2010). Individual differences in false memory from misinformation:cognitive factors. *Memory*, 18(5), 543-555

토 론

토 론 내 용

사 회 : 진형혜(변호사 / 서울 제1중재부 중재위원)

토론자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광엽(YTN 경제부장)

최진웅(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성옥(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토 론 내 용

○ 윤여진 (토론자)

저희 언론인권센터도 언론보도 피해구제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사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보도피해자들이나 댓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을 포장해서 수용자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뉴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적 극단화와 혐오를 조장하며 사회의 유대를 잠식하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지금이 소셜 미디어 시대, 인터넷 기반 디지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황용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가짜뉴스가 기만적 의도를 가진다면 상당부분 정치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가짜뉴스의 규제논의 역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중 이 문제에만 집중하여 법적 규제를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무시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다른 여러 지점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적 단체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민간업체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 강화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세훈 교수님이 소개하신 가짜뉴스 대응방안 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뉴스에 대한 분별력, 비판적 이해와 수용,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 과부하 시대에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는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체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재활용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렇게 공개된 정보를 언론이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의 관심사별로 분류해서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심의와 관련해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팩트체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널리즘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개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 이광엽 (토론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어서, 가짜뉴스의 해법으로 과도한 법적 규제를 앞세운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부 업무를 오래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여러차례 방문하고 제재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법적 제도가 추가된다면 실질적으로 언론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기사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다른 제도를 통해 언론을 옥죄는 규제가 추가된다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황용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알림표시의무같은 것을 도입한다면 언론사 기사에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기사가 일방적으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처분까지 도입된다면 과잉규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새로운 규제를 찾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절차 이외에도 형법상 명예훼손, 허위사

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권위있는 언론사를 Fake news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권력기관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 법적 규제 장치를 잘못 만들면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체적인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국립미디어교육센터인 ‘클레미’가 주목받고 있는데,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뉴스의 옥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제작교육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진웅 (토론자)

현재 가짜뉴스 게시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고, 신문사나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는 없고, 가짜뉴스가 SNS나 포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우 현행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황용석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추가로 정보통신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된 것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 처벌 외에도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정보를 즉각 삭제할 법적 의무를 추가하여 가짜뉴스를 즉각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제입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규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만큼 가짜뉴스의 피해가 큰지,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작용이 있는지, 처벌대상 확대에 의한 부작용이 어떠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이 가짜뉴스를 규제할 인센티브가 없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공적 규제를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문법상 등록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언론사를 사칭하여 불법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게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가짜뉴스 생산자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유포행위자에게 적용될 때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통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신속하게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사업자입니다.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해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유통되는 막대한 가짜뉴스를 현실적으로 모두 삭제할 수 없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SNS중에서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관할권이 없어 처벌의 효과가 미치지 못합니다. 국내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될 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상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 윤성욱 (토론자)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고 제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짜뉴스를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규제 방안들은 가짜뉴스가 뉴스의 형식을 빌려서 작성되었다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신문법이나 방송법상의 보도에 대한 정의가 언론진흥정책에서는 활용 가능할 수 있으나, 규제대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FCC나 국내 규제기관이 뉴스 장르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유사보도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팩트 위주의 전통적인 뉴스의 영향력이 정말로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층일수록 단순히 뉴스가 전달하는 팩트보다는 팩트를 재해석하거나 설명해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뉴스 형식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봅니다.

이용자들은 뉴스를 소비하면서 재창작합니다. 뉴스의 팩트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재가공하거나 패러디하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독자들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알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뉴스 주체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인은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자격증이 주어지는 직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고용인력 등으로 뉴스주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신문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저널리스트의 개념 안에 영향력 있는 블로거까지 포함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생각해 보면 과연 기성 언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하는 영역과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상업적 홍보와 관련된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없는 순결한 세상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두렵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민주주의 사회에

서는 가짜뉴스가 유통되었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세월호 인신공양설 같은 것은 분명히 허위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금지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상업적 표현물에 비하여 조금 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견이나 논평, 유머, 풍자, 패러디의 영역은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더 이상 새로운 법이나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짜뉴스를 해결하려면 좋은 뉴스에 대한 진흥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디어 내용규제는 하나의 규제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고 가짜뉴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기술적 규제, 미디어 교육 등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 진형혜 (사회자)

저는 발제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 언론 환경이 많은 기사를 단시간에 내보내다 보니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식의 보도가 결국 언론 스스로를 방관자의 자리로 내몰아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이것이 가짜뉴스의 범람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만 조직과 규범, 체계를 갖춘 언론기관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낼 것인데, 그 개인을 규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언론이나 온라인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규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정세훈 교수님께 이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정세훈 (발제자)

사실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 어디까지인가, 언론의 기사를 전달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합의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책무를 요구하지만 언론 기사가 보도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러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경우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그에 걸맞는 책무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시장주의적 입장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사업자, 모바일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지, 법적 규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를 강요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여진 이사님과 같이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하고, 최진웅 조사관님의 입장과 같이 국내사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시장논리에 따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율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활용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진형혜 (사회자)

뉴스라는 것에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윤성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뉴스 소비자들은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변형하여 팟캐스트 방송과 같이 다른 형태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를 어느 범위까지 규정해야 할지가 아직 분명치 못한 것 같습니다.

○ 최진웅 (토론자)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재 규제의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가짜뉴스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찌라시라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를 사칭하여 유포되는 정보는 우리가 믿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를 사칭하는 뉴스만을 가짜뉴스로 정의하면 입법적 해결책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여진 (토론자)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게재된 글이 기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포털을 통해 뉴스가 소비되고 있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시장이며,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0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이 자율적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사, 포털사업자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정세훈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소개하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흥미가 갑니다. 일반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거나 시민교육으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단체나 기관, 교육부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거나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정세훈 (발제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공공기관, 각급 학교에서도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양한 기관의 교육과정들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통합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효과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어떤 방법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검증과정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면서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가르쳤을 때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층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 시스템 개발, 법 적용 뿐 아니라 각종 캠페인을 통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상업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생산 유통된다고 생각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고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인터넷 언론이 제도권에 있지만 간혹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운영 과정에서 규제가

들어오는 경우 외에는 제도권 밖의 집단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외에, 언론에 대한 지원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세훈 (발제자)

인터넷언론 입장에서 가짜뉴스 자율규제의 동기가 부족하고, 기술구현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규제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자율적 규제가 어렵고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면,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팩트체크나 자율규제를 위한 기술구현을 위해서는 비용이 가장 큰 난관이 됩니다. 이 비용이 사업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비용이라는 합의가 있다면 공적 자금의 투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윤성옥 (토론자)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할 때 듣는 종합교통정보 같은 것이 뉴스일까요,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토크쇼를 뉴스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예능프로그램을 반론이나 정정보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인이 올리는 정보는 뉴스로 보기는 어렵고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언론의 자율규제나 언론사에 대한 진흥, 지원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

론사 사칭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등록된 언론사를 표시하는 인증제를 권장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유도하는 등 좋은 뉴스를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가짜 뉴스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진웅 (토론자)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정부가 신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사가 너무 많고, 검증되지 않는 보도도 많습니다. 자율규제를 실천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기금 지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제를 고려할 때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항상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시간이 듭니다.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형혜 (사회자)

황용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각 법률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만한 동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황용석 (발제자)

한국에는 매체법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규율대상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시장논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언론사가 일정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매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짜 뉴스를 저널리즘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제 컨퍼런스에서 구글 출신 발

표자는 Fake News라는 표현을 써서 정치인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Misin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Fake News라는 것은 아주 정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KISO, 과기부, 방송통신위, 문화부, 미래부 각 계에서 가짜뉴스 관련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기술을 인공지능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계획이 나와서 내년에 3개 팀에 30억씩 R&D 투자가 진행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과도할 정도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이것은 정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원입법안도 성과주의적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에서는 크로스체크에 대해 펀딩을 하고, AFP를 중심으로 프랑스에서도 협업형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저널리즘 팩트체크와 관련한 150개 단체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보 유통에 있어 검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롭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매개했다는 것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규제조항들을 만드는 것은 각 부처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비스 교수는 우리가 아무리 팩트체크를 해도 그 팩트체크가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힘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 사안에 대해 더 폭넓은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 상호신뢰의 검증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법안분석을 해 보면서 이것이 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통해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병선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가짜뉴스를 사회적 현상의 일부분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합니다. 가짜뉴스는 뉴스가 아니므로 미디어나 저널리즘의 관련 법률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저지른 사람을 돈을 내지 않고 유통을 시킨 것으로 보아 유통관련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뉴스가 아닌 것을 언론관계법에서 처리할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는 뉴스도, 저널리즘도 아니고 현재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이나 뉴욕타임즈를 가짜뉴스로 지칭하여 착시현상이 생겼는데, 인터넷매체를 포함한 우리 저널리즘은 가짜뉴스에 좌지우지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수준이 낮지도 않고, 발생하는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존재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의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저널리즘의 왜곡된 보도가 거의 허위사실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진형혜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보다 수준 높은 기사와 그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입법은 오히려 가짜뉴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 시점에 가짜뉴스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유익했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